

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</p> <p>1. “계좌통합관리서비스”(이하“본 서비스”라 함)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(상호금융회사의 미지급출자금, 미지급배당금 포함) 및 카드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,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(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보유한 계좌)를 잔고이전·해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</p> <p>1. “계좌통합관리서비스”(이하“본 서비스”라 함)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(상호금융기관의 미지급출자금, 미지급배당금 포함) 및 카드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,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(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보유한 계좌)를 잔고이전·해지하며, <u>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“계좌지급정지”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</u></p>	<p>상호금융기관으로 용어 통일</p> <p>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반영</p>
2.~5. (생략)	2.~5. (현행과 같음)	
<신설>	<p>6. “<u>계좌지급정지</u>”란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·고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다만, 금융투자회사 계좌 지급정지의 경우 매매거래는 제외됩니다.</p>	<p>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반영</p>
6.~12. (생략)	7.~13. (현행과 같음)	호체하
<p>13. “<u>핀테크기업</u>”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의미합니다.</p>	<p>14. “<u>계좌통합관리업무 이용기관</u>”(이하 “<u>이용기관</u>”이라 함)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<u>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</u></p>	<p>이용기관 의미 확대 (금융기관포함)</p>
14. (생략)	15. (현행과 같음)	호체하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4조(이용채널)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<u>은행창구</u>, 금융회사 및 <u>핀테크기업 비대면채널</u>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<단서 신설></p>	<p>제4조(이용채널)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<u>금융회사 창구</u>금융회사 및 <u>이용기관 비대면채널</u>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<u>단,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의 경우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이용기관 용어 반영</p>
<p>제9조(핀테크기업 비대면채널 이용방법) 고객은 <u>핀테크기업</u>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<u>핀테크기업</u>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9조(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이용방법) 고객은 <u>이용기관</u>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<u>이용기관</u>의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이용기관 용어 반영</p>
<p>제10조(조회) ① 고객은 제4조에 따른 이용채널에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및 <u>카드 정보</u>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및 카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, 고객이 제7조에 따라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.</p>	<p>제10조(조회) ① 고객은 제4조에 따른 이용채널에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및 <u>카드 정보</u>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및 카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, 고객이 제7조에 따라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.</p>	
<p>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및 <u>카드정보</u>는 <u>계좌통합관리서비스</u>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.</p>	<p>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및 <u>카드정보</u> 등은 <u>계좌통합관리서비스</u>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.</p>	<p>자구 수정</p>
<p>③·④ (생략)</p>	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	
<p><신 설></p>	<p>제12조(계좌지급정지) ①고객은 제5조, 제6조의 <u>계좌통합관리서비스</u>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제4조 이용채널에서 조회되는 <u>수시입출금계좌</u> 및 <u>금융투자회사</u> 계좌에 한하여 지급</p>	<p>지급정지 서비스 반영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	<p>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.</p> <p>③계좌지급정지시 해당계좌에 연결된 직불·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.</p> <p>④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·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. 단, 동 서비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</p> <p>⑤계좌지급정지에 의해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·요금·대출원리금 등의 미납, 연체로 발생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</p> <p>⑥계좌지급정지의 해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며, 금융회사마다 해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.</p>	
<p>제12조(고객의 개인정보보호) ~ 제14조(약관의 변경) (생략)</p>	<p>제13조(고객의 개인정보보호) ~ 제15조(약관의 변경) (현행과 같음)</p>	<p>조 체하</p>
<p>제15조(다른 약관과의 관계)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항에 준용합니다.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예(탁)금거래 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(탁)금약관,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6조(다른 약관과의 관계)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항에 준용합니다.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상호금융기관 의 경우 예(탁)금거래 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(탁)금약관,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조 체하</p> <p>상호금융기관으로 용어 통일</p>